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문화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3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5. 28.
- 라. 회부일자 : 2024. 5. 28.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금천구의회 의 승인을 받고자 함.

III.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관련서류 : 2023회계연도 결산서(안)

IV. 문화환경국 결산

1. 문화환경국 결산 총괄

가. 세입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19,533,915,000	19,519,201,750	19,258,037,300	98.6%
문화체육과	11,156,515,000	10,427,622,590	10,426,612,440	99.9%
청소행정과	7,527,333,000	8,285,019,280	8,073,364,320	97.4%
환경과	764,567,000	572,492,250	553,792,750	96.7%
부동산정보과	85,500,000	234,067,630	204,267,790	87.2%

나. 세출 총괄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B/A)
계	79,957,077,700	61,092,223,077	12,260,697,880	6,296,920,793	76.4%
문화체육과	36,313,159,300	21,822,889,367	12,066,868,880	2,269,121,113	79.2%
청소행정과	40,814,023,000	36,652,604,170	147,763,000	3,915,928,880	89.8%
환경과	2,483,438,400	2,305,897,020	46,066,000	76,246,320	92.8%
부동산정보과	346,457,000	310,832,520		35,624,480	89.7%

다. 집행잔액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사유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계	79,957,077,700	6,296,920,793	143,041,100	0	153,953,280
			75,196,360	5,924,730,053	0
문화체육과	36,313,159,300	2,269,121,113	99,571,450	0	11,438,000
			6,954,480	2,151,157,183	0
청소행정과	40,814,023,000	3,915,928,880	5,070,510		135,690,480
			68,241,880	3,706,926,010	
환경과	2,483,438,400	76,246,320	38,399,140		
				37,847,180	
부동산정보과	346,457,000	35,624,480	0	0	6,824,800
			0	28,799,680	0

라. 집행률 저조사업

(단위: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가)	지출액(나)	집행잔액 (가-나)	집행률 (나/가)
문화체육과	금천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46,945,000	14,578,000	22,687,000	51.7%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498,885,000	25,330,900	473,554,100	5.1%
	문화산업 관리	9,590,000	3,526,000	6,064,000	36.8%
	관광활성화	17,320,000	3,679,580	13,640,420	21.2%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	9,440,000	5,172,000	4,268,000	54.8%
	청소년 독서실 운영	37,591,000	20,664,200	16,926,800	55.0%
	금천구청 탁구단 응원 서포터즈 운영	14,510,000	5,562,280	8,947,720	38.3%
	박미빛물품프장 소규모체육 센터 건립	873,469,000	31,993,200	537,919,600	38.4%
청소행정과	자원순환보증금제	300,000	45,000	255,000	15.0%
	반환금 기타	32,408,000	17,917,520	14,490,480	55.3%
환경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5,000,000	1,754,630	3,245,370	35.1%
	에코에너지센터 운영 지원	3,000,000	1,200,000	1,800,000	40.0%
부동산 정보과	부동산통합민원 창구운영	560,000	-	560,000	0.0%
	중개업소 관리	264,000	41,400	222,600	15.7%
	개발부담금 부과	7,840,000	1,575,200	6,264,800	20.1%
	기본경비	42,504,000	14,870,000	27,634,000	35.0%

3.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구분	부서별	건수	금 액	사유
계		6	77,072	
전용	청소행정과	5	59,885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 -혼합폐기물 처분부담금 신고납부 변경 -재활용처리장 우수배관 긴급보수 -전기 수도요금 인상
	환경과	1	17,187	-금천에코센터 체험시설 교체 및 이전설치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30	12,260,697	14	9,624,131	16	2,636,566
문화체육과	26	12,066,868	12	9,476,368	14	2,590,500
청소행정과	2	147,763	2	147,763		
환경과	2	46,066			2	46,066

5.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785,504	43,869	64,161	30,525	819,141
환경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476,551	△5,116	23,082	28,199	471,434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308,953	38,753	41,079	2,326	347,707

6. 성과 보고

(단위: 천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1	8	15	3	10	2	61,092,223	54,354,058	6,738,164
문화환경국	1	8	15	3	10	2	61,092,223	54,354,058	6,738,164

가. 주요성과

- 구민이 향유하는 문화역사 건강도시 금천 조성
 -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주민설명회, 실시계획 인가, 철거 및 방수 착공으로 성과목표 모두 달성
 -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및 금천문화발전정책 네트워크 운영 목표 달성으로 문화 예술 인프라 조성
 - 문화유산 발굴조사 착수 및 시흥행궁전시관 운영 활성화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
- 폐기물 재활용과 감량으로 자원순환도시 조성
 - 전년도 수거량 대비 9.6% 증가한 22,274톤 수거
 - RFID 종량기 15대 설치를 모두 달성
-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으로 그린 금천 구현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교체 지원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
- 구민 편의 중심의 맞춤형 토지정책 실현
 - 주소정비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로 주소정보시설 관리율 103% 초과 달성

나. 정책사업목표 현황

(단위 : 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문화인프라 확충,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책임있는 문화 확립	3	3	3	11,932,050,490
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체육증진	1	1	2	8,294,855,930
폐기물 재활용과 감량으로 자원순환도시 조성	4	3	7	27,402,752,150
탄소중립 생활실천, 기후위기 대응능력 향상	1	1	1	366,816,430
체계적인 관리로 녹색사업장을 구현	1	1	1	926,018,430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소음 관리 강화	2	2	1	685,970,510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	1	0	1	49,940,110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	2	2	4	246,236,040

V. 검토의견

1. 세입·세출 결산

- 2023회계년도 문화환경국 세입결산액은 192억 5,803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징수률은 98.6%이며,
- 세출 결산액은 610억 9,22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6.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2억 6,069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총 62억 9,692만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정산잔액 1억 4,304만원, 낙찰차액 7,519만원, 지출잔액 59억 2,473만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395만원임.

2. 예산의 전용

-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문화환경국의 예산전용은 청소행정과 5건 5,988만 5천원, 환경과 1건 1,718만 7천원 총 6건 7,707만 2천원을 예산 전용하였음.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총 14건 96억 2,413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은 총 16건 26억 3,65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4. 기금 결산

- 문화환경국 소관 운용 기금은 2개이며 결산내역은
 -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8,550만원이며
 - 당해연도 증감액은 4,386만원이며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억 1,914만원임.

5. 성과 보고

- 전략목표 : 구민이 향유하는 문화역사도시! 건강도시! 금천

문화환경국은 1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정하였고, 성과지표 13개를 달성함.

주요 성과로는 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자원순환 도시 조성,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이 있음.

6. 검토 의견

- 2023회계연도 문화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 부서별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성과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월 사업 예산이 회계연도 내 사업 진행의 어려움 등 여러 사유로 매년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미루어지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집행으로 이월액을 줄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나 당초 본예산의 계획과 다르게 전용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임.

관계법령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08호, 2024. 4. 16., 일부개정]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6.>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